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1. 12. 24.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1년 12월 13일

○ 회부일자 : 2001년 12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1. 12. 18 :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홍 기)

가. 제안이유

- 서민생활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주택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업자가 대물 변제 받은 주택에 대하여도 감면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공동주택 최초분양 무주택 취득자 감면기간 연장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2001년 12월 말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12월 말일까지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경감하던 것을
 - 2002년 12월 말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말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도 경감될 수 있도록 기간을 1년 연장함. (제12조)
- 하도급업자의 대물변제 취득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 하도급업자가 주택건설업자의 부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제12조의2)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무주택자의 감면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과

하도급업자가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본 개정 조례안의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2001. 5. 30일 시달되었으나, 지금에 와서 개정하려는 사유와 감면규정 신설에 따른 세수감소 예상액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1999년 6월 3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와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이하 이조에서 “하도급업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登記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②(적용례) 제1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②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무 기간 경과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 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 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 록세를 추징한다.</p>	<p>제12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현행	개정안
<p>1. ~ 2.(생략)</p> <p>3.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1999년 6월 3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와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p>	<p>1. ~ 2.(현행과 같음)</p> <p>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1999년 6월 3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와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 한한다.</p>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2(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p>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이하 이조에서 “하도급업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p>

참 고 자 료

- 지방세법 (부분발취)
- 건설산업기본법 (부분발취)
- 행정자치부 감면조례개정 표준안 (사 본)

관계법령 발취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